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98
----------	------

2024년 4월 23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4월 3일, 광향기 의원 외 26명

나.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32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4년 4월 23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광향기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동행매력 정원도시 서울」을 선포하고 정원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정원의 효과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 도시화, 개인화, 초고령화 해결책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도시지역 아파트 주거문화 특성상 정원에서 누리는 여가문화활동의 기회는 매우 제한적임.

이에 민간정원을 조성, 공개할 때 필요 경비 일부를 지원토록 하여 민간정원 조성 및 공개를 장려하여 시민들이 정원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1)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 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10조의 2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해 민간정원을 조성하고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필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민간정원의 조성 및 공개를 장려하여 시민들이 정원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려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서울시는 지난해 ‘정원도시, 서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서울의 녹색 인프라 확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원도시’로의 전환을 피력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동 조례 제10조에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8조의6<sup>1)</sup>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서울시 내 민간정원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 제10조제2항과 같이 법 제18조의6제4항을 준용하여 시민이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1) 제18조의6(정원의 운영·관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민간정원의 개방) (생략)</p> <p><u>&lt;신설&gt;</u></p>	<p>제10조(민간정원의 개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시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